전문체육위원회 운영규정

제　정 2016. 3. 31.
개　정 2021. 7. 30.

제 1 조(설치근거 및 명칭) 본 위원회는 대한장애인사격연맹(이하 ‘연맹’이라 함) 정관 제31조 ①항에 따라서 설치·운영하며, 전문체육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칭함)라 칭한다.<개정 ’21.7.30>

제 2 조(목적) 위원회는 장애인사격 종목의 지도자 및 선수 양성·관리, 국가대표의 선발 및 훈련, 기타 경기력 향상 및 전문체육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, 의결, 자문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’21.7.30>

제 3 조(기능)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하고 심의한다.

1. 국가대표선발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2. 국가대표·후보·신인·꿈나무 선수 및 지도자 선발과 훈련에 관한 사항<개정 ’21.7.30>
3. 국가대표 강화훈련의 실시, 지도, 감독,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
4. 국제경기대회 국가대표 참가에 관한 사항
5. 전임지도자 운영, 관리, 평가에 관한 사항<신설 ’21.7.30>
6. 기타 국가대표 경기력향상 및 전문체육 발전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<개정 ’21.7.30>

제 4 조(구성)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위원장 1인
2. 부위원장 1～2인<개정 ’21.7.30>
3. 위원 10인 이내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
4. 위원회 내 장애인선수출신 1인, 여성 1인이 반드시 포함. 단, 장애인선수출신이면서 동시에 여성일 경우에는 장애인선수출신 1인 및 여성 1인 포함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.<신설 ’21.7.30>

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회장이 사무국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.<신설 ’21.7.30>

제 5 조(위원의 위촉)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.<개정 ’21.7.30>

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장이 위촉한다.<개정 ’21.7.30>

③ 위원은 당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.
④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.<신설 ’ 21.7.30>
1.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<신설 ’ 21.7.30>
2. 동일 대학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%를 초과할 수 없다.<신설 ’ 21.7.30>
3. 회장의 친족(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은 위원이 될 수 없다.<신설 ’ 21.7.30>
4. 위원은 장애인사격 종목 지도자를 겸직할 수 없다.<신설 ’ 21.7.30>

제6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단,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연맹 정기총회까지로 한다.<개정 ’ 21.7.30>
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<신설 ’ 21.7.30>

제7조(위원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신설 ’ 21.7.30>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회장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신설 ’ 21.7.30>
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신설 ’ 21.7.30>

제8조(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.
1.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
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3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6.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 실되거나 정지된 자
8.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, 민간단체 등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9.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, 민간단체 등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10.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, 민간단체 및 그 밖의 체육단체 등에서 (성)폭력, 승부조작, 직권남용 등의 비위, 또는 해태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사임하거나 해임된 자

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사임한다.

제 9 조(회의소집)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.<개정 ’ 21.7.30>

제10조(의결정족수)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
제11조(수당 등의 지급) 외부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,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위원의 해촉) ① 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촉 사유에 해당 된다.

②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.<개정 ’ 21.7.30>

1.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2.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13조(긴급한 업무처리)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.<신설 ’ 21.7.30>

제14조(제척 및 회피) 위원은 본인,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·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<개정 ’ 21.7.30>

제15조(사무처리) 위원회의 사무 처리는 사무국에서 담당한다.<신설 ’ 21.7.30>

부 칙(’ 16.03.31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제6조와 관련하여 최초 적용되는 임원에 대해서는 그 임기를 2017년 정기대의원총회까지로 한다.

부 칙(’ 21.07.30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